

공시송달공고

「구)임대주택법」 제31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을 위반한 임대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하기 전 사전통지(의견제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 가. 공 고 명 : 구)임대주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부과) 사전통지 알림
나. 공고기간 : 2024. 11. 7. ~ 2024. 12. 10. (34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임대사업자			위반 사항	
성명	등록번호	주소	대상 임대주택	위반항목
안*갑	2020-서 구-임대 사업자-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 ***호 (치평동, *****)	전남 순천시 지현길 **, ***** (오천동)	-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 위반 구) 임대주택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 위반

구 분	산정액	감경(20/100) 후 산정액	비고
과태료	250만원	200만원(20/100)	

마. 의견제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전남 순천시 중앙로 66,6층(장천동) 건축과 (우편번호 : 57956)		
전자우편	hun723@korea.kr	팩스	061-749-4669

1) 제출기간 : 2024. 11. 7. ~ 2024. 12. 10. (34일간)

※ 등기 및 전자우편, 팩스는 2024. 12. 10.까지 도착분 한함

2) 의견제출 :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로 통지의 의무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의무 위반 관련 의견 청취

의견제출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제출 내용	의견제출인(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3) 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

바. 문의사항 : 전라남도 순천시청 건축과(공동주택관리팀 ☎ 061-749-3058)